



의료법

[시행 2024. 5. 20.] [법률 제19421호, 2023. 5. 19., 일부개정]

보건복지부 (보건의료정책과 - 진료거부, 진료기록부) 044-202-2402, 2416

보건복지부 (보건의료정책과 - 진단서, 처방전, 의료행위 설명의무) 044-202-2402, 2406

보건복지부 (보건의료정책과 - 유인·알선, 의료광고) 044-202-2402, 2409

보건복지부 (보건의료정책과 - 전문병원, 안마사) 044-202-2405, 2415

보건복지부 (의료인력정책과 - 의료인 업무범위 등) 044-202-2437

보건복지부 (의료자원정책과 - 의료인 행정처분 등) 044-202-2453

보건복지부 (의료기관정책과 - 의료기관 개설, 기록열람, 의료기관 급식 기준 등) 044-202-2481

보건복지부 (의료기관정책과 - 의료기관 시설·인력기준 등) 044-202-2474

질병관리청 (의료감염관리과-의료관련감염 예방) 043-719-7584

보건복지부 (의료기관정책과 - 의료법인, 의료기관개설위원회) 044-202-2485

제45조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)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(이하 "비급여 진료비용"이라 한다)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1. 18., 2011. 12. 31., 2016. 3. 22.>

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.<개정 2010. 1. 18.>

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·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.

[전문개정 2009. 1. 30.]